

I . 반론보도청구사례^{주)}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1996. 2. 15.자 결정 (95라178)

대법원 1996. 4. 30.자 결정 (96마367)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신성택 대법관)은 한국 [] 공사노동조합이 경향신문사 외 6개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재항고심에서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앞서 항고심 관할부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보현 부장판사)는 기각결정문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라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중재기일 1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정간법 제18조 제5항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 본 사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법률(제 5145호, 1995. 12. 30.)이 시행(1996. 7. 1.)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된 사건들이어서 사건명이 정정보도청구로 표기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이 그 권리의 성격에 적합하게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되었으므로 본 판결집에서는 반론보도청구사례로 구분하여 게재한다.

며 1심결정 중 각하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신청인은 1995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의 “한 [] 분규 안보차원 엄단” 제하의 기사 등 피신청인들이 게재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한국 [] [] 노조가 불법적인 노조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지가 있다”고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왔고 국가전복의 저의를 갖거나 국가안정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95서울중재155~162)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문제의 보도는 대통령의 담화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고, 발언 내용 또한 대통령 통치행위로 생각되고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었다. 그 가운데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신청에 있어서 중재기일에 신청인이 불참하여 중재신청이 취하 간주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조선일보사 등 5개 신문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법원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의견에 불과하고 노조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결정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1995. 9. 30.자 결정(95카기3525)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4집 pp. 103~112 참조〉

이에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 다시 기각결정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다.

2심 決 定 文

사 건 : 95라178 정정보도

신청인, 항고인: 한국 [] 공사노동조합

서울 []

대표자 조합장 유 []

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안상운, 이상경, 김기중

피신청인, 상대방: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

대표이사 안신배
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백윤재, 김훈, 김철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권오기
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3.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손주환
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복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4. 주식회사 세계일보
서울
대표이사 황환채
지배인 이봉식
5.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장원찬, 최승인
6.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홍석현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장재근
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제1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5. 9. 30. 고지 95카기3525 결정

주 문: 1. 항고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1. 신청인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별지목록 제1-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별지목록 제2-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2-2 정정보도문을,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서울신문에 별지목록 제3-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세계일보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세계일보에 별지목록 제4-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조선일보에 별지목록 제5-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중앙일보에 별지목록 제6-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일간 한국일보에 별지목록 제7-1 기재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목록 제7-2 기재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제1항의 이행기간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매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결정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이유 중, '제2항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 2항 기재의 판단을 부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결정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중재피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야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중재신청인은 단 '1회' 만이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인 바, 이는 중재신청인과 중재피신청인을 합리적 기준없이 차별하는 법규정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과 달리 되어 있는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결국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혼란을 줄이고 언론활동에 대한 충격이나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권리남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규정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데, 중재위원회의 중재기일에 당사자의 불출석 등 불성실한 태도는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원인이 되므로 중재절차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 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의 출석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신청인에게는 1회 불출석의 경우 중재신청 철회간주로,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2회 불출석의 경우 합의간주로 삼고 있는 것인 바,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피신청인에 비해 신청인에 대해서는 단 1회의 불출석만으로도 불이익을 입도록 하였더라도 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의 적극적 당사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소극적 당사자보다 출석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적극적 당사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소나 상소가 취하되는 데에 반하여 소극적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의제자백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우리 법제도에 특유한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한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점, 신청인의 1회 불출석으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다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위 법 제18조 제1항) 피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구제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신청인의 중재기일 1회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위 법 제18조 제5항이 신청인을 피신청인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세계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15.

재판장 판사 이 보 현
판사 박 홍 우
판사 주 한 일

〈별지목록 제1-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1-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1-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분규, 안보차원 엄단/통신망파업은 국가전복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1-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순히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 [] 노조가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의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장 등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통신이 파업할 경우 국민 생활에 주는 불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며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특히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해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오후 이형구 노동부장관,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부 장관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노조원이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한국 [] 공사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때에 일부 불순 노조원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와 한국 [] 공사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 앞으로 정부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공권력 투입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직장에 복귀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소용없었다”면서 “이런 권유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대답했다. 李장관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한국 []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대와 한국 [] 사태는 다른 사안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별지목록 제2-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동아일

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2-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2-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 파업위협, 국가전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2-3) 보도내용

정부는 19일 한국 [] 노조의 파업움직임을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으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규정, 엄중한 대처방침을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측 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한국 [] 사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이날 오후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 []이 파업할 경우 행정·경제·산업·언론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재형 부총리, 이형구 노동,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 등 3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최근 현대자동차와 한국 []의 노사분규와 관련,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하고 불법행위 관련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별지목록 제3-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서울신문」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3-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3-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韓 [] 파업위협 국가전복 底意』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3-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사태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손주환 서울신문사장,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현소환 연합뉴스사장 등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임원진 21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인 한국 [] 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기관의 업무를 포함, 경제·산업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윤여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한국 [] 의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지목록 제4-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세계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4-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4-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분규 국가전복 저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4-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진 21명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국 []이 파업을 할 경우 그것이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이 업무가 마비되고 신문 방송의 제작도 중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 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한국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5-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조선일보」 제1면 좌측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5-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5-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좌측 상단부분에 『한 [] 파업때 국가위협 간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5-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노조가 법으로는 불가능한 파업을 결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IPI(국제언론인협회) 한국위원회(위원장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이사들과의 오찬석상에서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으로서, 한국 []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그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작년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법을

어기는 파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는 작년말부터 파업과 같은 극한상황에 대비하여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훈련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우수발명인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다과를 베푸는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한 어조로 되풀이했다.

〈별지목록 제6-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중앙일보」 제1면 우측 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6-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6-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사태 안보차원 대처, 김대통령, 통신방해는 국가안전 위협』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6-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사태에 대해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엄중한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이사진과 오찬을 함께 하며 IP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정부는 한국□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파업과 같은 극한 상황에 대비해 즉각 대체할 수 있는 요원을

혼란시켜 놓았으므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므로 파업할 경우 행정과 경제·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국가기관 업무가 마비되고 신문·방송의 제작도 지장을 받게 되는 등 국민생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 [] 노조가 이런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난해 5월부터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 정보통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7-1〉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송달 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생하는 「한국일보」 제1면 우측최상단 부분에 별지목록 제7-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 제8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7-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대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전복 저의 없다.

중제목 : 한국 [] 노동조합, 불법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 없다.

소제목 : 한국 [] 노동조합,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실 없다.

본지는 지난 5. 20.자 1면 머릿기사로 “한 [] 사태 국가안전 위협, 김대통령, 파업강행엔 법따라 엄단”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별지목록 제9기재와 같이 정정합니다.

〈별지목록 제7-3〉 보도내용

김영삼 대통령은 19일 한국 [] 사태와 관련, “한국 [] 노조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며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에 따라 엄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진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한국 []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라며 “한국 []이 파업할 경우 국민생활에 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행정, 경제, 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별지목록 제8〉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덕체활자로, 대제목 부분은 검은색 바탕의 흰 글씨의 140급 고덕체활자로, 중제목 부분은 각 80급 명조체활자로, 소제목 부분은 50급 명조체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정정보도신청인 부분은 50급 고덕체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목록 제9〉

한국 []노동조합이 불법으로 파업을 하거나 불법파업을 결의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거나 국가의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노동조합에 대하여 국가전복 저의가 있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과장된 허위내용임이 드러났다.

한국 []노동조합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거나, 노조의 활동으로 국가안전이 위협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노동조합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바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익에 직결되는 정부의 통신개방정책과 대미 통상협상 자세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통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시해 왔다.

한국 []노사는 지난 5월 중순경 3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회의절차 등의 논의를 마치고 5월 19일부터 임금과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었다.

한국 []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상에 임하는 조합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5월 19일 전남대학교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노조는 쟁의에 돌입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쟁의를 유보하며, 5월 21일부터 10일간 냉각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유보하면서까지 국가통신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를 지켜 왔다.

또한 한국 [] 노사간의 단체협상과정에서 한국 [] 노동조합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거나 조종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다.

정정보도신청인 한국 [] 공사노동조합

大法院 決定文

사 건 : 96마367 정정보도

재항고인 : 한국 [] 공사노동조합

서울 []

조합장 유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김기중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2. 15.자 95라178 결정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30.

재판장 대법관 안 용 득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지 창 권

주심 대법관 신 성 택

□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

서울지방법원 1996. 7. 4.자 결정 (96카기288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7월 4일 []상사 대표 양 [] 씨가 축산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상사는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낙농가에게 사후 수리봉사를 해 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축산신문은 1996년 4월 12일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 속출”,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 제하의 기사에서 독일 []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는 3년 전후부터 A/S를 거의 하지 않아 관련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신청인은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96서울중재107),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89 정정보도

신청인 : 양 []

서울 []

대리인 변호사 손경한, 최형구

피신청인 : 주식회사 축산신문

서울

대표이사 윤봉준

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여달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축산신문’의 제3면 기사란 우측 하단 부분에 가로 9cm, 세로 2단 크기로, 그 우측 상단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32급 고딕체활자로, 그밖의 여백에는 세로로 별지목록 제1.기재 반론문의 내용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축산신문 제3면 기사란 하단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목록 제2.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32급 고딕체활자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위 제목의 옆 및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주 2회 발행하는 ‘축산신문’ 1996. 4. 12.자 제3면 우측 상단부분에 젓소 착유현장 사진과 함께 가로로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 속출』, 세로로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내용으로 “착유설비를 수입, 판매 중인 일부업체가 장기간 A/S를 하지 않아 관련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관련 낙농가와 업계에 따르면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는 3년 전후부터 A/S를 제 때에 하지 않은 데다 일부지역은 A/S를 거의하지 않아 관련 농가들이 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 산청지역의 경우 B유업으로 납유 중인 H씨를 비롯 K씨 등. 낙농가 30여 명은 5년 전후 착유기를 구입, 사용해오다 맥동기·조절기 등의 고장이 발생해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반년이 넘도록 소모성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이에 []상사 한 관련인은 A/S는 정확히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일부 직원이 출장일지를 제 때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및 신청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축산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반론보도의 내용으로서는 위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목록 제2.기재의 정정보도문 중 위 인정한 반론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위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경영하는 []상사와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일부 낙농가 사이에 착유기 고장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사는 []상사로부터 착유기를 구입한 경남 산청 지역의 낙농가에게 사후수리 봉사를 해주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반론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기사부분의 크기,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4.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목록 제1〉 반론문

축산신문 1996. 4. 12.자 제3면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속출』이라는 제목하에 독일 []사로부터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 [])는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30여 명이 []상사로부터 구입한 착유기가 고장나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소모성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낙농가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즉, []상사는 착유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A/S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상사가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30여 명에게 A/S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축산신문의 보도내용은 []상사와 분쟁 중인 일부 낙농가의 의견을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전체의 견해인 양 보도한 것이다.

반론보도신청인 양 [] ([]상사 대표)

〈별지목록 제2〉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문

정정보도문

축산신문은 1996. 4. 12.자 제3면에 『일부 착유설비 수입 판매업체 사후봉사 엉망 농가 피해속출』이라는 제목과 『팔고난 후 '나몰라라' 집단진정 등 민원 빈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독일 []사로부터 밀크 파이프라인 등 착유설비를 수입, 농가에 판매 중인 []상사(대표 양 [])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경남 산청지역의 낙농가 30여 명이 []상사의 착유기를 구입, 사용해 오다 고장이 발생해 방문을 요구했는데도 A/S는 커녕 부품마저 보내주지 않고 있어 큰 손해를 보고 있으며, []상사측 관련 직원은 출장일지를 제 때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상사의 착유기를 구입, 설치한 경남 산청지역의 24개 낙농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에 의하면 이들 낙농가는 []상사의 A/S와 관련하여 축산신문사의 취재에 일체 응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축산신문사의 위 보도내용은 []상사와 분쟁 중인 극소수 낙농가의 의견을 사실확인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남 산청지역 낙농가 전체의 견해인 양 과장한 것이고, []상사측 관련 직원은 축산신문사의 취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응답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서비스장부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비스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한 것일 뿐이며, []상사는 착유기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A/S를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신청인 양 (상사 대표)

검찰 발표내용이라 하더라도 신문을 통해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1.자 결정 (96카기286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1일 15대 총선시 전남 선거구 국민회의 후보였던 국 씨가 연합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사내용이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통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각 정정보도문 중,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소환받은 바 없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당초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후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정정한다는 부분은 반론이 아닌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연합통신은 1996년 3월 30일 “검찰,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08시 00분 송신) 및 “검찰, 공천자금 국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

(09시 54분 송신), “초점 ‘焦點’ 공천현금 수사본격화, 의미와 전망”(11시 09분 송신)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은 신청인이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 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원을 공천현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바 공천현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고, 1996년 4월 28일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18시 17분 송신)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과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노갑 당선자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다”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위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96서울중재109). 피신청인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68 정정보도

신 청 인 : 국
 전남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통신
 서울
 대표이사 현소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 박현욱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21시간 이내에 대한민국 전역으로 배포되는 연합통신에 별지 제1, 제2기재 각 반론문을 각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 만료시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 시간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에 연합통신에 별지 제3, 제4 기재 각 정정보도문을 각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1996. 3. 30. 대한민국 전역에 배포한 연합통신을 통하여 『검찰, 공천 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08시 00분 송신) 및 『검찰, 공천자금 국 []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09시 54분 송신), 『〈초점(焦點)〉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11시 09분 송신)이라는 각 제목하에 “검찰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남 []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국 [] 후보가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 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 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원을 공천현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바 공천현금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후보를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각 송신된 사실, 그리고 1996. 4. 28. 대한민국 전역에 배포한 연합통신을 통하여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18시 17분 송신)이라는 제목 아래 “8억원의 공천 현금을 낸 국 [] 당선자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 당선자(국민회의, 전국구)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며,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이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송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위 1996. 3. 30.자 기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위 1996. 4. 28.자 기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4기재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각 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보도한 위 각 기사 내용이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피신청인의 통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실질적으로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위 각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서 신청인은 위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기사에 대하여 반론,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정보도의 내용으로서 위 1996. 3. 30. 자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별지 제1기재 내용과 같이, 위 1996. 4. 28. 자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별지 제2기재 내용과 같이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각 정정보도문 중, 신청인은 검찰로부터 소환받은 바 없다거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당초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게재된 후의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고, 위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정정한다는 부분은 반론이 아닌 민법상의 정정보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모두 신청인의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1.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여 훈 구

판사 김 형 두

〈별지목록 제1〉 공천헌금 관련 반론문

…제15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헌금한 적 없다.

연합통신은 1996. 3. 30. 『검찰, 공천헌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 및 『검찰, 공천자금 국[鞫] [] 후보(국민회의) 수사(종합)』, 『〈초점[焦點]〉 공천헌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이라는 각 제목하에 “검찰은, 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남 [] [] 선거구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부터 공천을 받은 국 [] 후보가 공천을 앞두고 1995. 11.부터 1996. 1.까지 사이에 전남 국민상호신용금고의 30여 개 차명계좌에서 총 8억원 가량을 전액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어 그 인출한 금액을 공천헌금으로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제15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에 현금을 하거나 공천자로 확정되면 새정치국민회의나 당지도부에 현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 바 없다. 그리고 국민 상호신용금고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비밀계좌를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이 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별지목록 제2〉 공천현금 관련 반론문

…제15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현금한 적 없다.

연합통신은 1996. 4. 28. 『검찰 선거사범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8억원의 공천현금을 낸 국 [] 당선자와 그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 당선자(국민회의, 전국구)는 검찰의 선거사범 집중 수사대상이다”라는 요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본 신청인은 권 [] 의원에게 공천현금으로 금8억원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소속 정당에 공천현금을 낸 사실도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별지목록 제3〉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국 [] 후보(국민회의), 공천 관련 현금한 적 없다.

본 문 : 연합통신이 1996. 3. 30. 『검찰,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후보 1명 수사착수』 및 『검찰, 공천자금 국[] 후보(국민회의)수사(종합)』, 『〈초점(焦點)〉 공천현금 수사 본격화, 의미와 전망』이라는 각 제목하에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 [] 후보(전남 [])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현금을 한 적이 없다. 국 [] 후보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민 상호신용금고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도 없고 비밀계좌를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국 [] 후보는 지난해 11월말부터 금년 1월말까지 8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없다. 국 [] 후보는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자로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나 당지도부에 현금을 내기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국 [] 후보는 검찰로부터 이른바

공천 헌금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 및 도명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로 소환당한 사실이 없고 또 전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국민회의)

<별지목록 제4>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목 : 국 [] 후보(국민회의), 공천관련 헌금한 적 없다.

본 문 : 연합통신이 1996. 4. 28. 『<초점(焦點)> 검찰 선거사범 수사, 당선자 사법처리 전망』이라는 제목하에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 [] 후보(전남 [])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하여 헌금을 한 적이 없다.

국 [] 후보는 권 []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금8억원을 지불하거나 지불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국 [] 후보는 검찰로부터 이른바 공천헌금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및 도명계좌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국 [] (국민회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1인이
언론중재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피해자는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1996. 8. 9.자 결정 (96카기282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996년 8월 9일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주식회사 바른언론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

청인 바른언론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바른언론은 1996년 3월 30일자 제1면에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강요에 시달려” 제하로 신문확장지 강제투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400가구 중 170가구가 구독의사와 관계없이 배달되는 신문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피해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중앙일보가 무단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중앙일보는 시계 등 경품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를 야기하고 1년 내내 신문확장대회를 열어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주식회사 중앙일보는 의정부 아파트촌 82가구에 중앙일보 확장지를 배포한 바 없고 경품은 본사가 아닌 지국에서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지를 통해 허용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는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인용 결정을 했다.

이 사건기사가 보도되자 중앙일보는 1996년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98)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定文

사 건 : 96카기2828 정정보도

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대표이사 홍석현

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윤용근, 여상규

피신청인 : 주식회사 바른언론신문사

서울

대표이사 이영우

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바른언론의 제1면 기사게재 부분의 좌측 가운데 부분(바른언론 1996. 3. 30.자 신문 중 「확장지 조사결과에 관한 도표」를 게재한 부분)

에 가로 10cm, 세로 14cm의 크기의 여백에다가 그 위쪽에는, 가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1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만료 익일부터 이행만료시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피신청인은 위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신문 바른언론에 별지 2. 정정보도문 게재방법에 따라 별지 3.에 기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주 1회 발행하는 바른언론 1996. 3. 30.자 제1면 좌측 상단부분에서부터 제2면 좌측 중앙부분에 이르기까지 대제목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강요에 시달려』, 소제목 『본지, 신문확장지 강제투입 실태조사』, 『연중실시 부수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 부추겨』, 『경품제공여전... 일부 가정선 소송의사 밝히기도』라는 제목 아래 본문 기사 내용으로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 1백가구 중 12가구 정도가 신문 강제투입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본지 조사팀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싹곡동 동신(3백24가구)·신성(3백36가구)·벽산아파트(3백24가구), 장암동 우성아파트(3백50) 등 총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의정부 일대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전체 1천4백 가구 중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없이 배달되는 이른바 「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경품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제공되고 있어 불공정거래 또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중략-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에 확장지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앙일간지 중 중앙일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확장지 피해 전체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문제가 되고 있는 확장지 살포는 신문 확장대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 관리소장은 “판촉의 일환인 신문확장대회는 일년내내 열린다”며 “신문 1부를 확장하면 배달원에게 1만원의 이익금도 배당하고 있다”고 말해 신문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다시 일 조짐이다. 김소장은 「확장대회는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략- 「확장지 살포에는 각 신문사 본사의 신문 과잉공급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의정부 일대의 중앙일보의 예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의정부지국의 김소장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의정부 8개 지구에 2만 8천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세의 모중앙일간지는 지국에 공급되는 전체 부수 중 유가지로 소화되는 양이 4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취재돼 김소장의 말은 다소 과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국에 배달되는 신문 중 적게는 35%가, 많게는 45% 정도가 판촉지라는 명목아래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기사와, 신청인 발행의 중앙일보가 확장지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 총 적발건수 170건 중 82건을 차지하여 점유율이 48.2%에 이른다는 내용의 확장지 조사결과표와 강제 투입된 중앙일보 등 신문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쌓여져 있다는 설명을 단 사진이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바른언론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이하 원문 기사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문 기사의 진위(眞僞)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문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문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1.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위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9.

재판장 판사 권 광 중
판사 김 형 두
판사 신 광 렬

〈별지 제1〉 반론문

바른언론 1996. 3. 30.자 제1면 좌측 부분에 대제목 『의정부 아파트촌 12.1%가 구독 강요에 시달려』, 소제목 『본지, 신문확장지 강제투입 실태조사』 등의 제목 아래 바른언론 신문의 조사팀이 의정부 아파트촌 일대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조사한 결과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 없이 배달되는 강제투입 신문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조사대상 중앙일간지 중 중앙일보는 위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투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일 조짐이다는 취지의 기사와,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 [] 관리소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으면서 위 김소장이 중앙일보 의정부 8개 지국에 28,000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중앙일보 등 신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쌓여 있는 사진 및 확장지 조사결과표와 함께 보도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신청인은 위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즉, 반론보도신청인은 의정부 아파트촌의 위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중앙일보 확장지를 배포한 바는 없다. 바른언론 신문의 기자가 위 김 []을 만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위 김 []도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반론보도신청인이 의정부 지국에 공급하는 중앙일보 부수는 매일 20,100부로서 판촉 목적의 무가지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론보도신청인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지국이 유리컵 세트나 어린이용 학습지를 일부 중앙

일보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고지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경품으로서 적법하다.

반론보도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별지 제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주간신문 바른언론 제1면 좌측 윗부분에 가로 25cm, 세로 23cm의 크기로 그 상단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견고딕체 7배활자로, 그 밑의 여백에는 별지 2. 정정보도문 내용을 명조체 132×110 활자로, 그 하단 여백에는 정정보도신청인을 견명체 19포인트 활자로, 그 옆의 (주)중앙일보사를 견명체 23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3〉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문

정정보도문

1996. 3. 30.자 본지(바른언론) 제1면 윗부분과 제2면 좌중앙부분에, (1) “본지(바른언론) 조사팀이 1996. 3. 18.부터 같은달 22.까지 의정부 신곡동 동신아파트 390가구 등 그 일대의 아파트 1,4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 12.1%에 해당하는 170가구가 구독의사에 상관 없이 배달되는 이른바 강제투입 신문 확장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중앙일간지 중 신청인 발행의 중앙일보는 위 확장지 피해 170가구 중 48.2%에 해당하는 82가구에 무단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라는 기사와, (2) 중앙일보 의정부 3동 지국의 김_____ 관리소장은 “판촉의 일환인 신문확장대회는 일년 내내 열린다. 신문 1부를 확장하면 배달원에게 1만원의 이익금도 배당하고 있다.”고 말해 신문확장대회가 무가지 살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신문확장을 위해 시계나 티스푼 등의 경품도 제공하고 있어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다시 일 조짐이다. 김소장은 “확장대회는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소장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의정부 8개 지국에 28,000부 가량 공급되는데, 이 중 65%가 유가지이며 나머지 35%가 무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사세의 모 중앙일간지는 지국에 공급되는 전체 부수 중 유가지로 소화되는 양이 45% 정도로 취재돼 위 김소장의 말은 다소 과장됐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국에 배달되는 신문 중 적게는 35%, 많게는 45% 정도가 판촉지라는

명목 아래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다”라는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그러나 위 (1)항 기사와 관련하여 본지(바른언론)는 위 조사대상 아파트 1,400가구의 일부만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을 뿐 위 가구들을 모두 방문하여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신문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연 위 신문이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투입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그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일일이 이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위 (2)항 기사와 관련하여 본지(바른언론) 조사팀이나 소속 취재기자들은 신청인의 의정부 3동지국 관리소장 김□□을 만나거나 전화 등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터뷰한 사실이 없으며, 위 김□□도 위 기사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편 신청인이 의정부 8개지국에 매일 공급하는 중앙일보 부수는 20,100부로서 그 중 관측목적의 무가지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신청인이 중앙일보의 구독확장을 위하여 직접 경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단지 신청인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지국의 3,500원 상당의 유리컵 세트나 1권에 500원하는 어린이용 학습지를 일부 중앙일보 구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고지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경품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정정보도신청인 (주)중앙일보사

□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을 발송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 10. 10.자 판결 (96카합1231)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1996년 10월 10일 □□□ 교육원 대표 전 □□ 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청구 소송판결에

서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보도내용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며 피신청인은 반론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하안누리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며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는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이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1996년 3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집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원 집계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96서울중재75)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동일사안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보도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지방법원 1997년 4월 16일자 판결 96가합23110)

判決文

사 건 : 96카합1231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경수근

변론종결 : 1996. 9. 12.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 프로그램의 각 중간 부분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의 각 첫머리에서 각 뉴스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각 화면 아래 부분에는 두 줄로 ‘하얀누리 교육원 교재 사기판매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글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크기로) 각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각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각 1일 금 2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6. 3. 6.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제목하에 “교재 판매업자들이 새학기 대학가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위 신청서들을 계약서처럼 이용하여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요지의 별지 3. 기재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교재판매 영업을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 교육원을 지적한 사실, 신청인은 [] 교육원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제1호중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이다.

위 방송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위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과 영업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이 위 방송내용 중 [] 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위 방송에 의하여 [] 교육원을 경영하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해 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인 주장의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내용 중의 상당부분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 교육원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교재판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보도를 한 것이므로 개별적 관련성을 결여한 부당한 청구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1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위 보도를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 교육원에 대한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학부모가 [] 교육원 명의로 작성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여주는 모습을 방영하였고, 그 외 다른 업체들 명의로 서류는 전혀 배경화면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 위 방송 중 기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판매 업체로 [] 교육원을 제일 먼저 낭독하면서 배경화면으로 교재판매업체라는 제목 아래에 [] 교육원을 맨 위에 적어두고 그 다음에 한국교육평가원,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태성문화공사를 순서대로 적은 다음 ‘등’ 23개 업체라고 적은 자막을 내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로서는 [] 교육원이 위 방송의 내용과 같은 형태의 사기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업체라고 생각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방송내용은 그 전부가 신청인이 경영하는 [] 교육원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또 신청인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문안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소을 제2호증의 1, 소을 제5, 6, 7, 9, 12, 13, 14, 15호증, 소을 제16호증의 1 내지 5호증, 을제 17호증, 소을 제18호증의 1 내지 6호증, 소을 제21 내지 24호증, 소을 제26 내지 29호증, 소을 제33호증의 5 내지 17, 25 내지 33, 59 내지 76, 80, 85, 86, 88, 89, 90, 소을 제34호증의 4, 5, 6, 소을 제35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이현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교육원은 F.G.S(Fellowship Group Study)라는 영어회화공부에 관한 대학연합동아리를 만들어 [] 교육원의 직원들이 각 대학가를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위 F.G.S. 동아리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교재를 보낸 후 그 교재비 명목으로 360,000원 혹은 420,000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사실, 위 대금은 [] 교육원에서 개설한 외국어 회화 강의를 포함한 교재대금인 사실, 소외 김 [], 이 [], 권 [], 박 [], 이 [], 이 [], 조 [] 등의 다수의 대학생들은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에 학교 선배 혹은 동아리 선배임을 자칭하는 [] 교육원의 영업사원들로부터 동아리 가입을 권유받고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한 사실,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을 한 대학생들 중 소외 권 [], 임 [], 이 [], 조 [], 이 [], 김 [], 황 [], 이 [] 등 다수의 대학생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어서 위 교재를 배달받은 후 본인 혹은 그 부모들이 위 교재신청을 취소하고 그 교재를 반품하였으나 [] 교육원에서 그 수취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재대금으로 제작비, 섭외비, 강사료, 회관운영비 등을 충당한다고 하면서도(위 대학생들이 위 [] 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의를 듣지 않겠다고 해약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계없이) 약정된 대금 전부를 교재비라고 하여 그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장, 독촉장, 호소문 등의 문서를 계속하여 보내고, 심지어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과 교재 구입자가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에서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부분의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의 반론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위(1)항에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 중 당원이 인정한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내용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이 []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의 반론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안 중 다.항에서 살핀 부분 이외의 부분은 피신청인의 원래의 보도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거나,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반론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그 부분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그 외에 위 인용된 부분을 넘어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거나 위 1일 금 10,000,000원의 범위를 넘어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10.

재판장 판사 심 명 수

판사 최 중 길

판사 윤 태 호

〈별지 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6. 3. 6. 'KBS 9시뉴스'와 '뉴스라인'에서 『교재 사기판매 극

성』이라는 제목하에 “교재판매업체들이 새학기 대학가에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판매인들은 학교선배라고 사칭하여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면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하여 가입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위 신청서들을 계약서처럼 이용하여 교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반품을 요구할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러한 형태의 사기판매를 하는 업체 중의 하나로 [] 교육원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 교육원을 운영하는 진 [] 씨는 [] 교육원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자격증 안내문이나 설문지 등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바도 없다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본 방송 1996년 3월 6일 ‘KBS 9시 뉴스’ 및 ‘뉴스라인’ 에서 방영한 『교재 사기판매 극성』이라는 보도 중 [] 교육원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교육원은 신입생들을 상대로 영어회화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사기판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 교육원은 학교 선배라고 사칭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자격증 안내문이나 영어강의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교육원은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거나 설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한 적이 없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 구입자가 법정기한 내에 교재를 반품해 올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약정된 손료 이외의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별도의 학원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교재를 반품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다만 교재 구입자가 반품을 요구하였는데도 [] 교육원이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또 교재 구입자가 법정 반품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교재를 반품하지 않으면서 교재대금 납부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나타내거나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4차에 걸쳐 안내문과 호소문을 보낸 뒤 그 때까지도 교재를 반품하지도 않고 교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구입자에 대하여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교육원은 교재판매와 관련하여 당국으로부터 처벌이나 그밖의 어떠한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교육원은 사기판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별지 3〉 원래의 보도 내용

류 앵커: 새학기 모든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카세트 테이프와 교재 등을 강제로 사게 하는 사기판매가 대학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기 판매업자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에 법적처리신청예정통지서라고 하는 엉터리 독촉장까지 학부모들에게 보내서 위협하고 또 대금을 받아먹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 기자:(대학 캠퍼스를 비추면서)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하는 사기판매원들은 날로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판매원들은 학교 선배 등을 사칭하고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뒤 교재와 대금통지서를 집으로 보내 3, 40만원 하는 교재를 강제로 사게 합니다.

또 자격증 안내문을 보내준다거나 영어강의를 해준다고 속여 가입 신청서를 받아낸 다음 이것을 마치 계약서처럼 이용해 교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주는 장면과 회원가입 및 교재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비취줌)

특히 설문조사를 한다고 유인해 가입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 여학생:(얼굴을 가리면서) 반품을 하고도 요구하구요. 교재뿐만 아니라 다니지도 않은 학원비 40만원 정도까지 요구해서 황당했습니다.

이 기자:(소비자보호원에서 상대방이 읽고 문서를 작성하는 장면과 피해구제카드를 비취주면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교재 판매업체는 [] 교육원과 한국교육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태성문화공사 등 23개 업체입니다.

([] 교육원이 보냈다는 법적처리 적힌 편지봉투를 비취주고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자세히 비취줌) 특히 이들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교재 등을 반품하는 경우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라는 엉터리 독촉장으로 학부모들을 위협해 대금을 받아 내

기도 합니다.

피해자 학부모:(얼굴이 보이지 않은 자세로 법적처리신청예정통보서를 보면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많이 걱정을 했죠.

박[](소보원 피해구제국):(내용증명서를 손으로 들고 비춰주면서) 흔히들 전화로 사업자한테 해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화로 하면 객관적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약을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 기자:(대학 캠퍼스와 [] 교육원에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판매는 지난 3년 전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으나 사기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약해 새학기가 되면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입니다.

□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 위치와
분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1. 22.자 결정 (96카합3172)
서울고등법원 1997. 6. 10.자 판결 (96라265)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997년 6월 10일 신양중학교 교장 황○○ 씨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의 항소심판결에서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기사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1996년 6월 11일자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대제목하에 중간제목으로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나’ 가슴 만져”와 소제목으로 “말썽 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을 단 기사에서 문제의 교장인 신청인이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로 불러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끝부분에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6서울중재145) 피신청인이 “기사는 교사의 제보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심층취재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법원이 반론보도청구사건을 결정으로 재판한 것은 재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1심결정을 취소하였다.

1심 決定文

사 건 : 96카합3172 반론보도

신 청 인 : 황○○(黃○○)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길수, 신성철, 김오수, 이승준, 조경근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제23면(사회면)의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보도의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하고, 그 제목 아래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문 및 반론보도신청인을 11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의 좌상단부분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가로 18cm, 세로 4.5cm의 크기로, 내용은 5호활자로 가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는 결정 및 주문 제2항과 같은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6. 6. 11.자 제23면(사회면)의 상단 좌측부분에 대제목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 소제목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다’ 가슴만저』 『말썽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 그 아래 본문 기사내용으로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교장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교장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서울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은 지난달 16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은 ‘교장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 얘기를 하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다’고 말했다. 또 황교장은 두 여학생을 먼저 내보내고 ○양만 교장실에 남겨 문을 닫은 뒤 다시 비슷한 짓을 한 뒤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황교장은 10일 낮 12시 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중략)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겨레신문에 공표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적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에서 이미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의 끝부분에서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 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보도의 크기 및 구성과 그 중 위 반박보도가 차지하는 분량 및 내용, 대제목과 소제목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 전부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및 게재방법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반론을 제기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반론 보도문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기사 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간접강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주문 제2항과 같이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2.

재판장 판사 나 종 태
판사 김 대 응
판사 서 경 환

<제1목록>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보도의 반론문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곳에는 교감 및 학생주임 등이 함께 있었으므로, 황교장이 이들 앞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위 기사에서는 사건발생 후 학생주임이 관련 학생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시 위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 있다.

위 학생들은 황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제2목록> 신청인이 게재를 청구하는 반론보도문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본지 기사는 사실과 크게 달라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진구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 날 학생부실에는 학생 6명과 교감 및 학생주임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황교장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

위 기사에서는 학생주임이 퇴학 또는 전학 운운하여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진술서를 쓴 것처럼 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 기사내용과 같은 경위로 진술서를 썼던 것이 결코 아니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었다.

위 기사내용은 신양중학교에 침투한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학생들을 부추겨 문제가 되었다. 위 기사는 그런 부추김을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말만 믿고서 한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2심 判決文

사 건 : 96라265 반론보도

원고, 피항소인 :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조경근, 김오수, 이승준

피고, 항소인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권근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변론종결 : 1997. 5. 20.

제1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6. 11. 22.자 96카합3172 결정

주 문 :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라.

만일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 사회면의 좌상단 부분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가로 18cm, 세로 4.5cm의 크기로, 내용은 5호 활자로 가로 2단에 걸쳐 게재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신문 1996. 6. 11.자 제23면(사회면)의 상단 왼쪽 부분에 대제목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 중간 제목 『3학년 3명 불러 ‘명찰 왜 안 달았나’ 가슴 만져』, 소제목 『말썽 나자 진술서 강요… 교사들 퇴진운동』이라고 제목을 단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교장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학교 교사들이 교장 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학생들과 교사들에 따르면, 서울 _____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은 지난 달 16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학교 사생대회를 마친 뒤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러온 여학생들 가운데 3명을 교장실에 불러 “명찰이 어디 갔느냐”며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은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 ‘부모님을 부르겠다’고 겁을 줬다”며 “자꾸 명찰 얘기를 하며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

또 황교장은 두 여학생을 먼저 내보내고 ○양만 교장실에 남겨 문을 닫은 뒤 다시 비슷한 짓을 한 뒤 “담배를 피우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성추행 시비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자 황교장은 10일 낮 12시 3분께 이들 3명을 다시 교장실로 불러 교감·학생주임 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은 “학생주임이 전학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고 말해 사실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교사들은 “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해 오늘 학교 밖에도 못 나가게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2. 제1심결정의 취소

가. 원고는 1996. 7. 8.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의 게재와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신청사건으로 처리하여 변론을 열지 않고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 1996. 11. 2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론보도 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도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경우 이외에는 변론을 열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이처럼 본래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할 사항을 원심이 결정으로 재판한 것은 재판의 방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제1심결정은 이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 단서를 준용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본안의 재판을 하기로 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1) 앞에서 본 피고 발행의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보도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적 주장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주장이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먼저, 피고가 게재한 위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된 언론사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며 진실에 부합되는 보도내용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및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가카19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 피고는 다시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보도에서 이미 원고의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반박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이미 보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위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로부터 위 보도내용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과 또는 위 학생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학부모 및 교사 등의 진술을 기재한 을 제1호증의 3 내지 6·17 내지 19·23·28 내지 31·33·35 내지 38·40 내지 42·61 내지 63·66·67, 을 제2,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에 배치되는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3 내지 15와 같다),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4·5, 을 제1호증의 9 내지 11·22·24·26·27·57 내지 60·65·66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게재를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가 위 기사의 끝 부분에서 “이에 대해 황교장은 ‘열심히 일한 교장을 일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음해한다’며 ‘나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10. 5.자 한겨레신문 22면에 원고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전체 기사 중 원고의 반론내용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량 및 위 기사의 제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반론내용을 일부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위 기사 전체에 대하여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사내용을 보도한 이

후 1996. 6.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9차례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①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교육청에서 조사하고 있고, ② 교사와 학생들이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③ 시민단체에서도 원고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고, ④ 원고가 1994년경 교사도 성희롱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계속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한 것만으로 원고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결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의 내용과 크기 및 게재방법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피고의 기사 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법익, 그리고 위 보도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론보도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다.

(2) 또한 위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한겨레신문에 게재하되,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 면의 좌단 중앙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을 『반론보도문』이라는 큰 제목은 26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 관련 반론문』이라는 작은 제목은 18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나머지 내용은 11포인트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1회 게재하는 것이 원 보도문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다. 간접강제

한편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0.

재판장 판사 이 용 우
판사 최 완 주
판사 강 일 원

〈별지 1〉 반론보도문

교장의 여중생 성추행 보도관련 반론문

1996. 6. 11.자 한겨레신문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황교장은 학교 사생대회를 마치고 집에 곧장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부에 불려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하고 교복 윗도리 상단 주머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주면서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며, 황교장이 교장실에서 여중생들의 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 또한 학생들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서를 쓸 당시 학생들을 퇴학시키겠다는 등 위협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위 기사에서는 일부 교사가 황교장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우려하여 교사들을 학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별지2〉 원고가 게재를 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했다는 본지 기사는 사실과 크게 달라

1996. 6. 11.자 한겨레신문은 23면(사회면)에서 『교장이 여중생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 신양중학교 황아무개(55) 교장이 여중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황교장은 복장이 불량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3명을 교장실로 불러 훈계를 하던 중 명찰을 달도록 교복 상단의 명찰 주머니 안에 들어 있는 명찰을 꺼내며 주머니를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인데, 신양중학교에 침투한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학교 내의 교권 장악을 위하여 문제된 학생들을 부추기면서 황교장이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언론사의 기자들에

게 유포시킨 것이다.

위 기사에서는 황교장이 학생부실에서 여중생의 조끼 안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으나, 그 날 학생부실에는 학생 6명과 교감 및 학생주임이 함께 있었으므로, 이들이 보고 있는 데서 황교장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위 기사에서는 학생주임이 퇴학시키겠다, 전학시키겠다고 하여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진술서를 쓴 것처럼 되어 있으나, 황교장은 1996. 6. 10. 오늘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차 학교를 방문했기에 여학생 4명을 교장실에 오도록 한 다음,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교장이 크게 중상모략에 당하고 있다. 내가 언제 너희들 가슴을 만진 일이 있느냐?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하였고, 동석한 교감과 교무주임, 3학년 주임 등 4명도 여학생들에게 “우리 앞에서 솔직히 말해 보라”고 하자, 위 여학생들은 “교장선생님이 우리 가슴을 만진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렇다면 그 사실을 진술서로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학생주임이 퇴학 또는 전학 운운하여 진술서를 썼던 것은 결코 아니다.

위 기사는 황교장이 교사들을 밖에 못나가게 했다고 하였으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바로 그 날 조퇴를 허가받고 학교 밖에 나간 교사가 2명이나 있었다.

그러므로 위 신문기사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아니한 채 일부 운동권 교사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말만 믿은 나머지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보도이다.

반론보도청구인 황○○

□

보도내용에서 특정되거나 추지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나
언론기관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자 판결 (94카합3123)
서울고등법원 1995. 7. 12.자 판결 (95나11261)
대법원 1996. 12. 23.자 판결 (95다37278)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996년 12월 23일 성균관대학교 정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피신청인인 한국방송공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는 KBS-1TV 1994년 10월 6일 21:00시 뉴스시간에 “국가안전기획부는 미국 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은 그 해 10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이 지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자(94서울중재27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

1심 判 決 文

사 건 : 94카합3123 정정보도

신 청 인 : 정

과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김기중,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변론종결 : 1995. 2. 6.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9시뉴스 시간 첫머리에서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정 교수 북한장학금을 받거나 친북활동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 (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제1텔레비전에 별지목록 2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 방법에 따라 별지 제3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이 유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4. 10. 6. 9시뉴스 프로그램에서 『북 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 아래 진행자인 소외 이 이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기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장학금으로 공부해 대학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지난 8월 서강대 박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동안 10여 명의 대학교수들을 내사해 왔다고 밝히고 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교수들을 연행

해 조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보도과정에서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라고만 표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위 방송 당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는 『교수들 친북조사』라는 제목하에 “안기부가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 []성균관대 []과 교수와 송실대 김 []과 교수를 긴급구속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고, 이보다 앞선 같은 날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북장학금 교수 구속』이라는 제목하에 “안기부가 현직 대학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구속해 독일 유학 중 밀입국하거나 이적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친북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으며, 방송 다음 날인 1994. 10. 7.자 조간신문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 등에서 북한장학금 교수와 관련한 안기부의 연행조사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성균관대 정모 교수(42세) 또는 성균관대 []과 정 []교수(41·여)라고 지칭하였다.

다. 위와 같이 동 시간대 또는 그 전후로 방송, 보도된 다른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및 신문 기사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위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1994. 10. 6.자 KBS 9시뉴스의 신청인 관련 보도는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해 연행조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을 한 것이고, 다음 날인 1994. 10. 7. 안기부의 「독일 유학생 부부 간첩 사건」 발표에 따라 신청인 등은 별다른 혐의사실이 없어 귀가조치되었다는 방송을 다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안기부의 설명을 근거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거나 이 사건 방송 다음 날 신청인이 별다른 혐의없이 귀가조치되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은, 앞서 본 이 사건 방송의 경위, 그 내용, 방송방법, 방송시간, 신청인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20.

재판장 판사 김 용 주
판사 강 선 희
판사 이 흥 구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 9. 9시뉴스에서 『북장학금 교수조사』라는 제목하에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이 박□ 총장의 북한장학금 교수 발언과 관련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성균관대학교 □과 정□ 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박□ 총장이 말한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하며 안기부 수사과정에서도 북한장학금 수령여부나 친북활동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 후 최초로 방송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KBS-1TV) 9시뉴스의 시작 직후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로 표시하고, 그 다음 줄에는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라는 글씨를, 그 다음줄에는 “정□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에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 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뉴스 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9시 뉴스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단에는 『1994년 10월 6일 북장학금 교수 조사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을 계속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정보도문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중, 하단에는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 전문을 계속 두 줄씩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가로로 표기하되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는 10자 내지 15자로 한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소제목, 단락이 끝나는 부분은 10글자에 미달하여도 한 줄로 처리한다.

3. 정정보도문을 표시할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배경화면은 녹색 또는 청색계통의 단색으로 하며 배경화면의 밝기와 글씨의 선명도는 정정보도문임을 나타내는 글씨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 외에는 음향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3〉 정정보도문

제 목: 정 []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

본 방송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에 방영된 『北장학금 교수 조사』 보도 중 성균관대학교 [] 과 정 []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 [] 교수에 대한 대북혐의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정 []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이외에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7년 10월 출국하였다. 독일정부기관인 개발원조처가 그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칼재단은 정교수의 왕복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심지어 귀국 때의 이사비용과 박사학위논문 출판비용까지 부담하였다.

정교수는 박 [] 총장이 말한 이른바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정교수를 연행한 안기부 수사관은 정교수에게 긴급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교수는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북한장학금의 수령여부나 밀입북여부, 친북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본 방송의 미확인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정 [] 교수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2심 判決文

사 건: 95나11261 정정보도

신청인, 피항소인: 정 []

과천시 []

피신청인, 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서울

대표자 사장 홍두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변론종결 : 1995. 6. 7.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4카합3123 판결

주 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제1텔레비전에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 제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자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위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별지 2목록 기재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 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항쟁한다.

가. 피신청인은 위 뉴스 방송 중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이름을 지명한 것이 아니고 '모 대학' '정모' 교수라고만 밝혔으므로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보도내용만으로는 신청인의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허위 보도로 인한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상황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위 뉴스방송 전후로 보도된 다른 방송 또는 신문 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편견 없는 상당수의 시청자나 또는 그

뉴스 내용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라면 위 '정모' 교수가 신청인임을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다고 보여져 피해자가 특정되고 보도내용과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됨은 물론 그 보도내용에 비추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상당히 손상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은, 위 1994. 10. 6.자 KBS 9시뉴스의 신청인 관련 보도는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교수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해 연행조사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을 한 것이고, 다음 날인 1994. 10. 7. 안기부의 「독일유학생 부부 간첩사건」 발표에 따라 신청인 등은 별다른 혐의사실이 없어 귀가조치되었다는 방송을 다시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그 신청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사 피신청인이 안기부의 설명을 근거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 믿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방송하였다더라도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훼손되었음에는 영향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방송 다음날 신청인이 별다른 혐의 없이 귀가조치되었다는 해명성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청인이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권리가 실현되었다 할 수 없어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자의 입장에서 보도된 사실에 관하여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거나 원문보도를 진실에 맞게 시정정보도할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 주장의 별지 3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중 보도내용을 진실에 맞게 바로 잡는다거나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사죄한다는 부분은 정정보도청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부당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정정보도 뉴스를 9시뉴스 첫머리에서 방송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9시뉴스 시간은 국내외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보도하는 시간대인데 신청인의 이 사건 반박내용을 머릿기사로 방송토록 함은 뉴스가치의 형평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위 보도내용은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간첩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는 것으로 신청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뉴스라 할 수 있고, 한편 신청인은 그와 같은 보도에 대하여 반박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문보도의 시간대보다도 앞서 방송하여야 시청자들에게 그 반박보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박보도문에 관하여는 그 자수에 관한 제한 외에 달리 방송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반박 보도문을 9시뉴스 첫머리에 방송토록 함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져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마. 끝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원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제41조 5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정정보도문에는 정정보도를 위하여 원문요약 기사가 먼저 인용되어야 하므로 정정보도기사 자체를 아주 간략하게 하지 않으면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을 수 없어 실제로 동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따라서 동 규정의 의미를 원문의 자수와 정정보도문 중 인용된 원문 기사를 제외한 순수한 반박보도문의 자수만을 비교하여 원문기사의 자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원문보도는 대체로 함축 요약되어 보도됨이 상례임에 반하여 반박보도는 그 속성상 함축된 원문기사에 대하여 반박을 하여야 하는 탓에 원문의 자수를 초과하여 반박함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박보도가 원문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원문보도보다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새김이 상당하다고 볼 때 결국 위 방송법의 규정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임의규정 내지는 훈시규정으로서 원문보도의 내용 여하에 따라 동 규정의 준수여부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가. 내용

앞서 살핀 원문보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반박보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하고, 원문인용분의 자수를 제외하고 순수한 반박보도문의 자수를 원문보도 자수인 186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은 별지 1목록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방법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피신청인 제1텔레비전 9시뉴

스 시간의 첫머리에 진행자의 우측 상단화면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정□ 교수 북한장학금을 받거나 친북활동 한 적 없다」라는 문장을 계속 표시하면서(다만 글자는 평소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하여야 한다),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의 보도방법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별지 3 기재의 방법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12.

재판장 판사 신 정 치
판사 구 만 회
판사 조 동 섭

〈별지 1〉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4. 10. 6. 9시뉴스에서 『북 장학금 교수 조사』라는 제목하에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이 박□ 총장의 북한장학금 교수 발언과 관련해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당사자인 성균관대학교 □□□□ 과 정□□ 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 박□□ 총장이 말한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하며 안기부 수사 과정에서도 북한장학금 수령여부나 친북활동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 후 최초로 방송되는 한국방송공사 제1텔레비전(KBS-1TV) 9시뉴스의 시작 직후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로 표시하고, 그 다음 줄에는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하여”라는 글씨를, 그 다음 줄에는 “鄭□□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 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뉴스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을 9시뉴스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단에는 『1994년. 10월 6일, 北장학금 교수조사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을 계속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정보도문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중, 하단에는 뉴스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 전문을 계속 두 줄씩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가로로 표기하되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는 10자 내지 15자로 한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소제목, 단락이 끝나는 부분은 10글자에 미달하여도 한 줄로 처리한다.

3. 정정보도문을 표시할 글씨는 흰색으로 하고 배경화면은 녹색 또는 청색계통의 단색으로 하며 배경화면의 밝기와 글씨의 선명도는 정정보도문임을 나타내는 글씨가 쉽게 식별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낭독 외에는 음향은 방송되지 않도록 한다.

〈별지 3〉 정정보도문

제목: 정 [] 교수, 북한장학금 받은 사실 없다.

본 방송 1994년 10월 6일 KBS 9시뉴스에 방영된 『北장학금 교수 조사』 보도 중 성균관 대학교 [] 과 정 []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정 [] 교수에 대한 대북협회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정 []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정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장학금 이외에도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정교수는 1976년 독일 에큐메니칼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77년 10월에 출국하였다.

독일정부기관인 개발원조처가 그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에큐메니칼재단은 정교수의 왕복항공권, 체류기간 동안의 생활비, 심지어 귀국 때의 이사비용과 박사학위논문 출판비용까지 부담하였다.

정교수는 박 [] 총장이 말한 이른바 북한장학금 교수와는 무관함이 밝혀졌다.

정교수를 연행한 안기부 수사관은 정교수에게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5다37278

신청인, 피상고인 : 정□□

피신청인, 상고인 : 한국방송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7. 12. 선고 95나11261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당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여기에서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방송법이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위 법 개정으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사실 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위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게 방송의 사실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당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서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한 보도내용이 신청인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다툼이 없는 바, 그로써 신청인과 보도내용의 개별적 연관성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방송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방송의 보도가 개인적인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형성에 미치는 방송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 방송법 제41조 제5항이 규정하는 정정보도문의 자수 제한은 혼시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에 관한 간결한 기재로 구성되어 있는 이상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원문보도문의 자수를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방송을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9시뉴스 중간 시간에 원문보도를 한 데 대하여 원심법원이 9시뉴스 시작과 동시에 정정보도를 명한 것이 위법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구 방송법에는 정정보도의 방송 시간이나 순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오히려 구 방송법 제41조 제6항은 정정보도는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7조 제1항은 법원이 정정보도심판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할 정정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횟수 등과 함께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들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방송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공표한 내용이 “신청인 등이 북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국가의 안보와 교육, 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보도와 같이 큰 전파가능성을 가진 것은 아님에 비추어 보면, 원심 법원이 9시뉴스 시작과 동시에 이

사건 정정보도를 하도록 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2. 23.

재판장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김 석 수
대법관 이 돈 희
주심 대법관 이 임 수

□

속보와 해설 기사를 통해 신청취지가 상세히 보도된 이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자 판결 (95카기299)

서울고등법원 1997. 6. 13.자 판결 (96나44350)

대법원 1997. 10. 28.자 판결 (97다28803)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최종영 대법관)은 1997년 10월 28일 전 강원도의원 정 [] 씨가 강원 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심판상고심에서 “피신청인이 애도서신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를 통해 문제의 서신이 김일성 애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않은 지엽말단적인 것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1995년 9월 6일자 “鄭 [] 씨 검찰 소환”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인 정씨가 김일성 애도서신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에 정 [] 씨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95강원중재13)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공인이므로 알 권리의 대상이 되며, 사건기사 보도 후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어 이를 상세히 보도했으므로 신청인의 정정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으나 2심법원은 피신청인 패소를 취소하고 정정보도청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한편 이와 함께 강원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각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7. 11. 6. 판결 96가합2272)

1심 判決文

사 건 : 95카기299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 정 [] (鄭 [])

강릉시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사(江原日報社)

춘천시 []

대표이사 조 남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변론종결 : 1996. 8. 22.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자의 강원일보의,
가. 제1판의 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2단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

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고,

나. 제3판의 19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2단의 크기로, 오른쪽 윗부분에는 세로로 『반론문』이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의 활자로 게재하고, 그 밖의 여백에는 별지 2.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10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제1, 2, 3판의 19면에 6단, 2.3cm 크기로, 오른쪽에는 6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호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정 [] 씨 정정보도 사건에 승소·김일성 애도편지로 볼 수 없어』라는 소제목을 영호활자로, 『김일성 애도편지… 운운은 강원일보의 왜곡기사로』, 『검찰 재소환 추가 보강조사 벌인 바 없는 허위조작기사로 밝혀져』를 각 4호활자로, 위 소제목의 왼쪽에 세로로 6단에 걸쳐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활자로 게재하라는 결정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부분에 『정 [] 씨 검찰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김일성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 = 선거사범처리문제로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정 [], 김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 김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강원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이하 ‘원문 기사’라고 한다)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문기사의 진위(眞僞)여부에 관계없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므로, 위 정정보도청구권(위 개정 법률에서는 제16조의 표목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었다)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원문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원문 기사 중 신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3.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제1판에는 별지1. 반론문의, 제3판에는 별지2. 반론문의 내용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신청인은, “강원일보가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등은 1995. 9.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보강조사와 기소는 물론 입건조치된 사실조차 없다”라는 내용도 정정보도문으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기사부분은 일단 그 내용이 강원일보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사실에 관한 보도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내용이 단지 검찰이 신청인 등에 대한 수사방향을 밝히고 그 추후처리에 관한 방침 내지 계획을 언급한데 불과한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검찰의 이러한 방침 등을 보도한 사실 자체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떠한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 위 기사의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2) 위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 서신이 '애도서신'이라는 부분은 기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낸 주관적인 가치판단부분(평가의 문제)에 불과하여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3) 위 기사의 내용 중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부분은 '김정일에게 보낸 서신'의 교열상의 착오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반론보도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증인 이 [] , 최 [] 의 각 증언만으로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반박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특히 신청인이 작성한 위 서신의 성격에 관하여, 신청인은 위 서신이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를 위하여 북한의 김정일에게 지원을 구하고 그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라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을제8호 증의 6, 9, 12, 14 내지 16, 38 내지 4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등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5. 1. 17.부터 같은 해 2.2.까지 1차로 중국을 방문한 후에 다시 같은해 3. 9. 2차로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 주재 북한 강원인민위원회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그들이 신청인 등을 만나는 것까지 피할 경우에 강원남북교류사업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그들과 만나서 위 교류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서신을 작성하였고 또 그러한 의도에서 위 서신의 서두에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위 서신의 작성 경위, 위 서신에 사용된 '위로'와 '애도'의 사전적 의미의 차이 { '위로' : ① 수고함을 어루만져서 치사함, ②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신한출판사, 신한 새국어사전), ①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함, ② 마음을 즐겁게 하고 수고를 치사함(약진문화사, 표준 국어대사전),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금성출판사, 금성판 국어대사전), '애도'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위

각 사전}), 위 서신의 전체분량(49행) 중 위 문구의 분량(2행) 등에 비추어 위 서신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편지라기보다는 강원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북한 강원인민위원회 관계자들 혹은 북한의 김정일에게 보내기 위한 협조촉구의 편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서신이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위 기사의 내용 중 이 사건 서신이 '애도서신'이라는 부분은 신청인 등이 작성한 위 서신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이는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기사가 기자의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위 기사의 내용 중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부분이 가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교열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작성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음에도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보도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고,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

나아가 반론보도문의 크기 및 게재방법에 관하여는 위 기사 중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원문 기사부분의 크기 및 게재 면수, 반론보도문의 글자수 등을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0.

재판장 판사 최 병 덕
판사 김 우 수
판사 김 성 대

별지 1. 반론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판 제19면 1단 및 2단 좌측부분에 『정 [] 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 및 『金日成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이후 정 []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별지 2. 반론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3판 제19면 1내지 3단 좌측부분에 『검찰, 정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김일성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정 [], 김 [] 씨가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추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 김 []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집중추궁 받은 사실이 없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별지 3.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 내지 3판 제19면 1, 2, 3단 좌측부분에 『검찰, 정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김일성 애도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前도의원 정

□, 김□, 정□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씨를 소환, 정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 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김□, 정□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정□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정□, 김□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김□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집중 추궁받은 사실이 없고, (6) 정□ 등은 95. 9. 5.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혹은 입건조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2심 判 決 文

사 건 : 96나44350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피항소인 : 정 □

강릉시 □

피신청인, 항소인: 주식회사 강원일보

춘천시 □

대표이사 조남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변론종결 : 1997. 4. 18.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1996. 10. 10. 선고 95카기299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제1, 2, 3판의 19면에 6단 2.3cm² 크기로, 오른쪽에는 6단에 걸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4호 활자로, 위 제목 왼쪽에는 『鄭 [] 씨 정정보도 사건에 승소·金日成 애도편지로 볼 수 없어』라는 소제목을 영호활자로, 『김일성 애도편지… 운운은 강원일보의 왜곡기사로』, 『검찰 재소환 추가 보강조사 벌인 바 없는 허위조작기사로 밝혀져』를 각 4호 활자로, 위 소제목의 왼쪽에 세로로 6단에 걸쳐 별지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의 성명을 본문 활자로 게재하라.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부분에 『鄭 [] 씨 검찰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金日成 애도 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前 도의원 鄭 [], 金 [], 鄭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사건 재조사를 미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鄭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鄭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鄭 [], 金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鄭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鄭씨와 金 [], 鄭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위 각 기사를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2.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신청인은 위 강원일보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1995. 12. 30. 법률 제 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 (1) 내지 (5)항과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고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를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기로 한다(당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별지 정정보도문(1) 내지 (6)항의 정정보도를 청구하였으나 (1) 내지 (5)항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부분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신청이 기각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1) 내지 (5)항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소갑5호증의 1 내지 18, 소갑6, 7호증, 소갑10호증의 1 내지 5, 소을8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정□□, 이□□, 최□□의 각 증언(다만 원심증인 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1) 신청인은 강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신청외 정□□, 김□□, 이□□, 이□□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 11. 17.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 인민위원회와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신청인과 위 정□□, 김□□, 이□□은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중국 심양 소재 북한영사관 김□□영사와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김□□영사부장 등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였다(다만 북경 소재 평양냉면집 경리에게 위와 같은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제안문건을 위 김□□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사후에 위 문건이 위 김□□에게 전달되었다).

(3) 신청인은 다시 위 정□□, 김□□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신청인은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정□□, 김□□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

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위 서신 초안에 아무런 수정 없이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각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신청인은 위 정 [] , 김 [] 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 에게 위 서신을 전달하였다.

(5) 그 후 신청인 등이 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신청인 등은 1995. 4. 1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경찰에서,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각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25.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신청인 등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위 김 [] 과 정 [] 은 같은 해 5월 및 6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은 신청인이 작성하였는데 위 김 [] 과 정 [] 은 이를 검토한 후 그대로 북한 측에 전달할 것에 동의하여 위 김 [] 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9. 5. 검찰에서 중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받았으나 위 서신에 반독재투쟁 등을 담은 경위나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6) 신청인 등에 대한 위 사건이 1995. 9. 25. 위와 같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자,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같은 해 9. 29.자 신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6단에 걸쳐 『前 도의원 3명 「對北 접촉 書信」 검찰, 무혐의 內査종결』, 『容共·이적 혐의 없다』는 제목하에 “정 [] , 정 [] , 김 [] 씨 등 전(前) 도의원 3명이 지난 3월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 등이 담긴 긴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던 춘천지검은 6개월만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서신 내용 중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과 김정일에 대한 존칭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작성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 등이 북한 외교관리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신을 작성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 [] 1등 비서와 이모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신 내용 및 남북교류 과정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지난 94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활동한 이상 서신 전달이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북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1)항 및 (2)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기사의 형태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크기와 내용 이상으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3)항 및 (5)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핵심은 위 정정보도문 (1)항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신이 아니라 남북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서신이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크기 및 내용으로 보도하여 이미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날인 위 1995. 9. 5. 검찰에서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신청인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

의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의미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과 다른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 중 (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위 서신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접 위 서신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 [] , 김 [] 도 검찰에서 1995년 5월 및 6월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3.

재판장 판사 김 대 환

판사 백 창 훈

판사 유 철 환

별지 정정보도문(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것)

강원일보는 1995. 9. 6.자 제1 내지 3판 제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검찰, 鄭 [] 씨 소환』이라는 제목 및 『金日成 애도서신관련』이라는 소제목 아래 “前 도의원 鄭 [] 金 [] , 鄭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사건 재조사를 미

루어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鄭 [] 씨를 소환, 鄭씨를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특히 鄭 [], 金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서신은 鄭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鄭씨와 金 [], 鄭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사항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나, (1) 위 서신은 김일성 애도편지가 아니라 강원남북교류 성사지원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편지이고, (2) 신청인 등이 북한의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3) 신청인은 95. 9. 5. 검찰 2차조사에서 위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 집중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4) 정 [], 김 [] 이 지난 5, 6월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청인이 김일성 애도서신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5) 신청인은 위 검찰 2차조사에서 김일성 애도서신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집중 추궁받은 사실이 없고, (6) 정 [] 등은 95. 9. 5.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 혹은 입건조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을 왜곡하여 잘못된 보도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정 []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7다28803 정정보도심판

신청인, 상고인: 정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헌록)

피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일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6. 13. 선고 96나44350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 이유를 본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일간신문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 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 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86. 12. 13. 선고 86다카8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강원일보의 1995. 9. 6.자 제1판의 19면 1단과 2단 좌측 부분에 『정 [] 씨 검찰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목의 왼쪽에는 『김일성 애도 서신 관련』이라는 소제목 및 “속보=선거사범 처리 문제로 전 도의원 정 [], 김 [], 정 [] 씨 등 3명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보낸 서신 사건 재조사를 미루어 왔던 춘천지검은 5일 오후 정 [] 씨를 소환, 서신을 보내게 된 경위와 강원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서신에 반정부투쟁 등을 담은 경위, 남북접촉승인 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같은 일자 제3판의 19면 1, 2, 3단 좌측 부분에 위에서 본 내용의 기사에 덧붙여 “특히 정 [], 김 [] 씨가 지난 5, 6월 소환조사 당시 김일성 애도 서신은 정 []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시, 서신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씨와 김 [], 정 [] 씨를 재소환, 강원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 전반에 걸쳐 추가 보강조사를 벌인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가 각 게재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강원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같은 도의회 의원인 신청외 정 [], 김 [], 이 [], 이 [] 등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 11. 17.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 인민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위 정 [], 김 [], 이 []은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 대사관 관계자 등과 접촉하여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자매결연, 남북강원도 의원 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 체육행사 교류, 학생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중국 심양 소재 북한 영사관 김 [] 영사와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 김 [] 영사부장 등과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한 사실, 신청인은 다시 위 정 [] , 김 [] 과 함께 남북강원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1995. 3.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 전 신청인은 남강원 도의회와 북강원 인민위원회와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의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을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의 초안을 작성한 후, 위 정 [] , 김 [] 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김정일의 지시 없이는 남북강원도 교류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또 1차 중국 방문시에 북한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접촉에 실패하였으므로 김정일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 북한측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은 서신을 준비해 가자고 제안하여 위 양인의 동의를 얻어 위 서신 초안에 아무런 수정없이 각자 서명을 하였는데, 위 서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신청인은 위 정 [] , 김 [] 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1995. 3. 20. 북경에서 북한측 관계자인 위 김 [] 등을 만나 남북강원도 교류 문제를 논의하면서 위 김 [] 에게 위 서신을 전달한 사실, 그 후 신청인 등이 위 서신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 신청인 등은 1995. 4. 12.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경찰에서, 같은 해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검찰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각 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9. 25.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강원남북교류추진위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신청인 등의 북한측과의 직·간접 접촉 등 활동 내용,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위 김 [] 과 정 [] 은 같은 해 5월 및 6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은 신청인이 작성하였는데 위 김 [] 과 정 [] 은 이를 검토한 후 그대로 북한측에 전달할 것에 동의하여 위 김 [] 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같은 해 9. 5. 검찰에서 중국에서 북한측과 접촉한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를 받았으나 위 서신에 반독재투쟁 등을 담은 경위나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 등에 대한 위 사건이 같은 해 9. 25. 위와 같이 무혐의 내사종결되자, 피신청인은 강원일보 같은 해 9. 29. 자 신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6단에 걸쳐 『前 도의원 3명(對北 접촉 書信) 검찰, 무혐의 內査종결』, 『容共·이적 혐의 없다』는 제목하여 “정 [] , 정 [] , 김 [] 씨 등 전(前) 도의원 3명이 지난 3월 김정일에게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 등이 담긴 서신을 보낸 것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에 착수했던 춘천지검은 6개월만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위 서신 내용 중에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는 인사말과 김정일에 대한 존칭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나, 통일원 등 관계기관과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작성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청인 등이 북한 외교관리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민간교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중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했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신을 작성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김□□ 1등 비서와 이모 씨를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신 내용 및 남북교류 과정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지난 94년 11월 17일부터 1년간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고 활동한 이상 서신 전달이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북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1)항 및 (2)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속보 및 해설 기사의 형태로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크기와 내용 이상으로 위 서신이 김정일에게 보내진 서신으로서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상세히 보도한 이상,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는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3)항 및 (5)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핵심은 위 정정보도문 (1)항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위 서신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신이 아니라 남북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례적으로 작성한 서신이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 1995. 9. 29.자 기사에서 이 부

분에 관하여 충분한 크기 및 내용으로 보도하여 이미 핵심 부분에 관하여는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날인 위 1995. 9. 5. 검찰에서의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정부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신청인에 대한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는 위 서신의 작성 경위 및 이를 보내게 된 경위, 위 서신에 신청인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의 의미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과 다른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기사에서 보도된 날에는 그러한 내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구하는 판시 정정보도문 중 (4)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위 서신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직접 위 서신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 김□□도 검찰에서 1995년 5월 및 6월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8.

재판장 대법관 이 입 수

주심 대법관 최 종 영
대법관 이 돈 희
대법관 서 성

□

반론보도는 단순한 반박뿐만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반론보도문의 사실주장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10. 30.자 판결 (97카합3509)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의열 부장판사)는 1997년 10월 30일 부안군과 부안군 군수 강□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강□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여, 노래비 건립경위에 대해 실시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론보도는 단순히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한국방송공사는 1997년 5월 17일 21:00 <KBS 9시뉴스> 프로그램 중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 제하의 보도에서 “부안군 강□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1997년 6월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97전복중재3), 중재불성립되자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7카합3509 반론보도심판청구

신 청 인 : 1. 강 []
전북 부안군 []
2. 부안군
대표자 군수 강수원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서울 []
대표자 사장 홍두표
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복대리인 변호사 조현수, 이병선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방송되는 KBS 제1텔레비전 'KBS 9시뉴스' 프로그램의 전북권뉴스 부분 첫머리에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상단에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1 기재의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위 5일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 강 []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 강 []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 강 []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 부안군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신청인 부안군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케이비에스 제1텔레비전(KBS-1TV) 'KBS 9시 뉴스'의 첫머리에서 뉴스 진행자의 오른쪽 상단화면에는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화면 아래부분에는 두 줄로 "부안군수 자신의 공적비 세운 적 없다"라는 문장을 표시하면서

(글자는 통상의 뉴스보도와 같은 크기로) 뉴스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2 반론보도문을 뉴스 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은 위 기간 만료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50,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신청인 강□□은 1995. 6. 27. 실시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인 전북 부안군의 군수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부터 부안군수로 재직 중이고, 피신청인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은 KBS 제1텔레비전의 1997. 5. 17. 21:00 'KBS 9시 뉴스' 라는 프로그램 중 전북권에서만 방영되는 뉴스부분에서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이라는 제목하에 "지방의회 본회의장 난입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부안군 강□□ 군수가 이번에는 또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소개 다음에 전경들과 몸싸움하는 장면을 비추면서 KBS의 기자인 신청외 김□□이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신성한 공무를 막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강□□ 부안군수. ...강□□ 군수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임에도 이제는 공적비까지 세우는 앞뒤 가리지 않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기 1년을 훨씬 넘게 남기고 공적비가 세워진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군민의 노래비 바로 옆에 세워진 공적비를 세우는데 들어간 예산은 6천만원, 부안 지역 각계의 반응은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표정입니다. ...의회의원들도 당초 예산 설명과는 달리 현직 군수의 공적비가 세워진 것은 편법이라며 강력 대응의지를 밝힙니다. ...공적비 파문이 확산되자 부안군은 부랴부랴 각계의 반발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13개 읍면지역에서도 기념표석을 세워 비난을 받고 있는 강군수는 이번에는 군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공적비를 세우자 지역주민들은 즉각 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갑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부안군 의회의원이나 예술인단체총연합회 부안지부장과의 인터뷰장면과 함께 방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 부안군은 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하여 공표된 위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안군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보도내용은 신청인 부안군의 대표자 개인인 신청인 강 []이 마치 스스로의 공적을 자화자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서 신청인 부안군의 직무집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신청인 부안군이 법률상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관한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해 신청인 부안군의 이미지가 사실상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보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대표자 개인이지 신청인 부안군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방송보도와 신청인 부안군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 부안군은 위 방송보도에 대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반론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나. 신청인 강 []의 신청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강 []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방송보도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재산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유 없는 부분

(가) 신청인 강 []은,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부안군이나 부안군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도 반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한 비판의견 존재 여부는 원래의 보도에는 없는 내용이고 다만 공적비 설치에 대하여 각계에 반발의견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신청인 강 []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방송보도한 내용과 신청인 강 []이 신청하는 반론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내용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는 것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 강 []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나) 또한, 신청인 강 []은 “KBS의 이번 방송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로서 이로 인하여 부안군과 강 [] 군수의 명예와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위 각 반론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론권이란 방송보도를 한 사람의 사과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은 신청인의 반론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강□□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진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는 방송기관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법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포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반론권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문제된 보도 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방송기관은 그 반론내용을 진실성 여부를 떠나 보도해 줄 일응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방송 등 언론기관에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문의 주장내용이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신청인의 반론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강□□이 반론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적비에 대한 것임에도 이 사건 반론보도문안 중 “부안군이나 작년…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라고 하는

노래비 건립경위를 실시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반론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반론보도라는 것이 보도를 접하는 일반 대중에게 원문과 이에 대한 반론을 동등하게 제공하여 대중들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뿐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론보도문에 신청인 강 [] 이 반론하고자 하는 공적비에 대한 부분이 아닌 노래비 설치경위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비라고 보도된 비석이 설치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 강 []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1일 금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신청인 강 []의 나머지 신청과 신청인 부안군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30.

재판장 판사 김 의 열
판사 유 현 중
판사 김 용 철

〈별지1〉 반론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1997. 5. 17. KBS 9시 뉴스 중 전북권뉴스에서 『군민의 노래비 공적비 반발』이라는 제목하에 “부안군 강 [] 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 부안군수는, 부안군이나 강 [] 군수가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고, 다만 부안군에서는 작년 부안읍 유일의 휴식공간인 서림공원을 종합쉼터와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래마당, 역사마당, 문학마당, 스포츠마당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 제34회 부안군민의 날에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기관의 단체장과 지역유지,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림공원에서 부안군민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그 옆에 노래비 설치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담은 초대민선군수 강□의 이름으로 된 건립취지석을 세운 것일 뿐이고, 위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금 6천만원이 아니라 금 1,523만원이라고 반박해 오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밝혀 드립니다.

〈별지2〉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

한국방송공사는 지난 5월 17일 밤 9시에 방송된 KBS 9시 뉴스에서 부안군 강□군수가 군비로 자신의 공적비를 건립해서 각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이나 강□군수는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사실이 없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작년 부안읍 유일의 휴식공간인 서림공원을 종합쉼터와 산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래마당, 역사마당, 문학마당, 스포츠마당을 세울 계획을 마련하였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5월 1일 제34회 부안군민의 날에 부안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기관의 단체장과 지역유지,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림공원에서 부안군민의 노래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그 옆에 노래비 설치에 대한 간략한 의미를 담은 건립취지석을 세운 것이고 강수원 군수의 공적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금 6천만원이 아니라 1,523만원입니다.

부안군민의 노래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부안군이나 부안군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부안군의회에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KBS의 이번 방송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로서 이로 인하여 부안군과 강□군수의 명예와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구 정간법상 정정보도청구권하에서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6. 15.자 결정 (95카합1359)
서울지방법원 1995. 8. 31.자 판결 (95카합2283)
서울고등법원 1996. 8. 13.자 판결 (95나38815)
대법원 1998. 2. 24.자 판결 (96다40998)

事實概要

대법원(주심 서성 대법관)은 1998년 2월 24일 방송위원회가 한국광고주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을 그 용어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가 <KAA 저널> 1994년 12월에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에 방송위원회의 광고제작물 사전심의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1995년 1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95서울중재20)을 하여 중재불성립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

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단순한 변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며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의 게재판결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본질
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심 決定文

사 건 : 95카합1359 정정보도심판청구

신청인 : 방송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김 창 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 영 황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대표이사 조 규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안한주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 저널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크기로 하여 별지 1기재 정정보
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
널 제3면에 6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이 유 : 이 사건 심문결과, 신청인의 신청은 별지 제1기재 정정보도문의 범위 내
에서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15.

재판장 판사 구 충 서
판사 김 은 미
판사 박 범 계

〈별지 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 드립니다.

〈별지 2〉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 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 학위교재인 일종의 상품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1심 判決文

사 건 : 95카합2283 정정보도심판청구이의

신청인 : 방송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김창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대표이사 민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안한주

주 문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 제1항기재 정정보도 결정을 별지 3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의 KAA 저널 1994년 12월호(제60호) 제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에 방송심의규정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빼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자,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방송의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등의 기본 직무와 함께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신청인은 이 법원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널 제3면에 62급 고딕체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

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정정보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6. 15.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저널의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 크기로 하여 별지 1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에 실린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독학 학위 교재 판매회사인 신청의 와이제이 물산이 신청의 이명박을 모델로 한 기업 이미지 광고물과 김 [] 의 1인을 모델로 한 상품 광고물로서 똑같은 광고물이 아니며,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심의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 기사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두 개의 광고물은 심의 신청일이 다르고, 비록 출연 모델, 대사 내용, 자막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청의 [] 물산이 독학 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이며,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안내라는 자막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이는 상업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2호증의 1, 2, 소갑 제3, 4호증,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의 1, 2, 소을 제3호증의 1, 2, 소을 제7호증, 소을 제9호증 2의 각 기재와 소갑 제5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물은 광고주는 주식회사 [] 물산으로서,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은 신청의 이 [] 이 모델로서 동인이 젊은 세대에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기업 이미지 광고인 바, 1994. 8. 14.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인에게 심의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이 광고물 중 [] 독학사, 독학사 [] 운운하는 표현이 주식회사 [] 가 현행 독학사학위 수여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며, 유명인사인 국회의원 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8. 22. 방송불가의 결정을 한 사실, 다시 1994. 9. 7.에 위 [] 프로덕션이 별지 4. 기재와 같이 자막 및 멘트를 작성

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유명인사인 국회의원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다시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1994. 10. 28. []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제 일주의라는 자막 및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여 조건부 방송가라는 결정을 한 사실, 또 하나의 광고물은 신청의 김 [], 오 [] 을 모델로 하여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 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학위 취득의 감격표현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로서 그 멘트는 별지 4. 기재와 같은 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1994. 9. 7. 신청인에게 그 심의를 신청하자 신청인은 위 광고물은 교재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것임에도 교재안내 운운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였고, 학사모를 쓴 모델이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성공체험을 증언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독학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바 이는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 규정 제85조 제2항 제1호 및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다시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 광고주체의 사업 내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청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독학학위 교재안내' 라는 자막을 '독학학위 교재판매' 로 바꾸도록 하여 조건부 방송가라는 심의결정을 내린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기사 내용에 대하여 1995. 1.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제출일자와 심의날짜 부분은 정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반론을 게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정은 할 수 없으며, 반론부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신청인은 반론만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1995. 2. 3. 중재불성립으로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비록 광고주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이 명박 모델의 광고물은 위 [] 프로덕션의 광고물 제작의도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의 위치에 이른 위 이 [] 국회의원의 사례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진취적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며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추천 보증이 없는 기업 PR성 이미지 광고이며, 위 김 [] 모델의 광고는 위 [] 프로덕션의 광고물 제작의도에서 보듯 실제 학사학위 수여자인 신청의 오 [] 및 텔런트인 신청의 김 [] 를 모델로 하여 학위수

여시의 감격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서, 단순한 상품광고이며, 따라서 위 두 개의 광고물은 그 출연모델, 소구목적, 상업문 내용, 화면 구성 등이 전혀 다르며, 또한 위 김 [] 모델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 안내'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단순한 상품광고인 점에 비추어 위 문구가 사업 주체의 원래 목적이 판매임에도 안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고, 위 이 [] 모델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기업 이미지 광고인 점에 비추어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장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는데...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라고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가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그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은 단순한 반론이 아닌 정정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정정보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 결정문 제목도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문'이 되어야 하고, 위 결정문 내용도 별지3. 기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론권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허위 여부임을 가릴 필요 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일응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지, 심리과정에서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만 정정을 명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이는 우리 법제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반론 내지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정보도에 가까운 반론권으로서 물론 이 경우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것은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를 위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그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언론중재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내용을 게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를 법원에 소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법원에의 제소 전단계로서 전문가에 의한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인 바, 조정은 당사자의 호양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지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분쟁해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조정의 한계로서 당연한 것인 바, 피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든 반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에도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중재과정에서 반론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신청인이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KAA 저널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그 내용, 게재 위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정정보도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1.

재판장 판사 구충서
판사 김은미
판사 박범계

별지목록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별지목록2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진단란」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 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 학위교재인 일종의 상품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

도합니다.

별지목록3 반론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KAA진단란」의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정정보도신청인 방송위원회

별지목록4

컨 셉	이 [] 모델 광고물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유명인이 된 국회의원 이 [] 을 모델로 하여 그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해 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	김 [] 외 1 모델 광고물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수여식에서 제품의 고마움과 학사취득의 감격표현을 통해 제품의 효과 소구
주연모델	이 []	김 [] (A), 오 [] (B)
배 경	도서실	학사학위 수여식장
상 업 문	* 멘트 (이 [])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라는 것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멘트 (여모델) 감사합니다. [] . 꿈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사모를 쓰게 되다니,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내게 [] 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죠. 그리고 난 오늘 드디어 학사모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우) (성우)

(30 초)	운명을 개척하는 선구자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자막 국회의원 이 []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주) [] 불산 회원제일주의 (02)763-[]	운명을 개척하는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 자막 감사합니다. [] 독학학위 교재안내 (주) [] 불산 회원제일주의 (02)763-[]
--------	--------------------------------------------------------------------------------------------------------------------------	-------------------------------------------------------------------------------------------------------

2심 判決文

사 건 : 95나38815 정정보도

신청인, 피항소인 : 방송위원회

서울 []

대표자 위원장 김창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항소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

서울 []

대표이사 민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변론종결 : 1996. 6. 25.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8. 31. 선고, 95카합2283 판결

주 문 : 1.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 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카합1359호 정정보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5. 6. 15.에 한 정정보도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위 정정보도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인 KAA 저널 1994년 12월호(제60호)의 제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에 방송심의규정 관련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루며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을 게재하자,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방송의 운영, 편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등의 기본직무와 함께 방송용 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KAA 저널 제3면에 62급 고덕채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정정보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5. 6. 15.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간되는 월간 KAA 저널의 7면 하단에 박스 기사로 제목은 24포인트 활자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내용은 9포인트의 활자 크기로 하여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신청인은, (1) 피신청인이 게재한 이 사건 기사에 실린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는 독학학위 교재 판매회사인 신청의 [] 물산이 신청의 이 [] 을 모델로 한 기업이미지 광고물이고 다른 하나는 김 [] 외 1인을 모델로 한 상품광고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광고물이 아니며, (2)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심의신청을 한 것도 아니라 같은 날 심의신청한 것이고, (3) 똑같은 광고물에 대해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사실과 다른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보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 위 두 개의 광고물은 그 심의신청일이 다르고, (2) 또한 비록 출연모델, 대사내용, 자막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청의 [] 물산이 독학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내용의 상품광고물이며, (3) 위 두 개의 광고물 중 하나의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을 게재하였고, 다른 광고물에는 ‘독학

학위 교재안내'라는 자막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독학학위 교재안내'는 상업문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정보보호청구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제1호증의 1, 2, 소갑 제2호증의 1, 2, 소갑 제3, 4호증, 소을 제1호증, 소을 제2호증의 1, 2, 소을 제3호증의 1, 2, 소을 제7호증, 소을 제9호증의 2, 소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소갑 제5호증의 영상에 당심증인 조 [] , 박 [] 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및 당원의 한국광고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위 증인 박 [] 의 증언과 위 사실조회 결과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광고는 그 목적에 따라 기업이미지 광고와 상품광고로 분류될 수 있는 바 기업이미지 광고는 기업이라는 특정조직에 대해 대중의 우호적인 태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광고이며, 상품광고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증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사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개의 광고물은 그 광고주가 모두 주식회사 [] 물산인데, 그 중 하나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외 이 [] 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물(이하 이 [] 광고물이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회사 [] 프로덕션이 신청외 김 [] 외 1인을 모델로 하여 제작한 광고물(이하 김 [] 광고물이라 한다)인 사실, 이 [] 광고물을 제작한 위 [] 프로덕션은 별지 4. 기재와 같은 자막 및 멘트를 작성하여 1994. 9. 7.에 신청인에게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광고물이 그 목적, 출연 모델, 광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한 상품을 광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 이 [] 이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하여 독학학위 교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물산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기업 이미지광고라 할 것인데, 위 광고물에서는 유명인사인 위 이 [] 이 모델로 등장하여 광고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함으로써(모델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는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 제일주의라는 내용의 자막이 있음)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시청자들이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의 결정을 한 사실(위 [] 프로덕션은 1994. 8. 17.에도 신청인에게 위 이 [] 을 모델로 하고 광고주가 위 [] 물산인 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다가 방송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광고물은 위 1994. 8. 17.자 광고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에 기업이미지 광고로 보이는 이 [] 광고물에서 상품판매의 욕구를 유발시

키는 표현인 ‘[]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회원 제일주의’ 라는 자막 및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한 사실, 한편 김 [] 광고물을 제작한 위 [] 프로덕션은 별지 4. 기재와 같은 자막 및 멘트를 작성하여 1994. 9. 7.에 신청인에게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광고물이 텔런트인 신청의 김 []와 실제 독학학사 학위 취득자인 오 []을 모델로 하여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학위 취득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제품을 추천하는 상품광고로서 독학학위 교재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인데, ‘교재안내’ 운운하여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였고, 학사모를 쓴 모델이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성공체험을 증언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과신토록 하여 사실과 다르게 독학학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바 이는 시청자가 광고내용을 그릇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 규정 제85조 제2항 제1호 및 제88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4. 9. 12. 방송불가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해 위 [] 프로덕션이 1994. 9. 26. 재심의 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1994. 10. 28. 광고주체의 사업내용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청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광고내용 중 ‘독학학위 교재안내’ 라는 자막을 ‘독학학위 교재판매’ 로 교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방송할 수 있다는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자 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1995. 1. 20.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광고물의 제출일자와 심의날짜 부분은 정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반론을 게재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정은 할 수 없으며, 반론부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신청인은 반론만으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1995. 2. 3. 중재불성립으로 종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 박 []의 일부 증언과 당원의 한국광고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이 사건 이 [] 광고물과 김 [] 광고물은 모두 1994. 9. 7.에 심의 신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심의 신청도 같은 해 9. 26.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이고, (2) 또한 위 두 개의 광고물은 비록 광고주가 동일하지만 그 출연 모델, 소구목적, 상업문 내용, 화면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 광고물은 주식회사 [] 물산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추천보증은 없는 기업이미지 광고인 반면, 김 [] 광고물은 모델로 하여금 학위수여식의 감격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독학학사 교재의 판매를 소구

하려는 상품광고이므로 별개의 광고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똑 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3) 이 [] 광고물에는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위 광고가 기업이미지 광고인 점에 비추어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장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한 것임에 반해, 김 [] 광고물에 나오는 ‘독학학위 교재안내’라는 문구는 위 광고가 상품광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업문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위 문구 중 ‘안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독학학위 교재판매’라는 문구로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라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신청인은 다시, 기사 신청인의 위 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정정보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법문상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인데 신청인이 청구하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은 단순한 반론이 아닌 정정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정정보도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 결정문의 제목도 ‘정정보도문’이 아닌 ‘반론문’이 되어야 하고, 위 결정문 내용도 위 반론문의 신청주체가 표시된 별지 3. 기재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 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이유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원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임을 가릴 필요 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우리 법제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1996. 7. 1.부터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반

론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으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당시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었다)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필요한 경우 단순한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주체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므로, 정정보도문 말미에 신청인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내용을 게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제소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를 법원에 소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 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제도는 법원에서 제소 전 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타협과 양보에 의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법적 성질은 중재가 아니라 조정인 바, 조정은 당사자의 호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지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분쟁해결에 성공할 수 없는 것은 조정의 한계로서 당연한 것인 바, 피신청인은 위 중재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모든 반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에도 이를 신청인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중재과정에서 반론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신청인이 그 권리의 신장이나 방어에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KAA 저널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그 내용, 게재 위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1995. 6. 15.에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위 정정보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여 이를 인가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 1심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13.

재판장 판사 이근웅
판사 주한일
판사 김상근

별지1 <정정보도문>

본지는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출된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며, 두 광고물에 모두 상업문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하나의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빼도록 하고, 다른 광고물에서는 상업문을 정정하여 넣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밝혀드립니다.

별지2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제60호) 5면 내지 제7면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회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광고물은 같은 날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한 것은 아니며 똑같은 광고물도 아닙니다.

광고물 중 하나는 기업이미지 광고였고, 다른 하나는 독학학위 교재인 일종의 상품 광고였습니다. 똑같은 광고물을 하나는 상업문을 빼라고 하고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하라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정정보도합니다.

별지3 반론문

KAA 저널은 1994년 12월호에서 「KAA 진단란」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제 7면에 “일전에 모 광고회사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구심을 갖고 실험적으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출하면서 하나는 상업문을 게재한 채 제출하고, 다른 하나는 상업문을 뺀 상태로 제출하였다고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업문을 게재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빼라고 조건부 통과 판결을 받았고, 상업문을 배제한 광고물은 상업문을 게재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문 게재신청인인 방송위원회는 당시 제출된 위 두 광고물은 동일한 광고물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며 ‘교재판매’ 문구나 ‘교재안내’ 문구나 모두 상업문이라고 판단하고서 심의 결정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반론문게재 신청인 : 방송위원회

별지4 이 사건 광고 내용

	이 [] 모델 광고물	김 [] 위 1 모델 광고물
컨 셉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유명인이 된 국회의원 이 [] 을 모델로 이용, 그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통해 제품을 암시적으로 추천	학사고시에 합격한 합격자가 학위 수여식에서 제품에 대한 고마움과 학사취득의 감격 표현을 통해 제품의 효과소구
주연모델	이 []	김 [] (A) 오 [] (B)
배경	도서실	학사학위 수여식장
상업문 (30초)	*멘트 (이 [])	*멘트 (여모델)

조.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학사모를 쓰게 되다니. 과연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내게 []는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
	이 시대가 바라는 것도 준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우) 운명을 개척하는 선구자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칠육삼에 일반 *자막 국회의원 이 []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 독학학위 교재판매 (주) [] 물산	그리고 난 오늘 드디어 학사모를 썼 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우) 운명을 개척하는 [] 사람들 칠육삼에 일반 *자막 독학학위 교재안내 (주) [] 물산 회원제일주의 (02)763- []

大 法 院 判 決 文

사 건 : 96다40998 정정보도

신청인, 피상고인 : 방송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조영황)

피신청인, 상고인 : 사단법인 한국광고주협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38815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 발행의 월간지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중 판시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신청인은 위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

고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필요한 경우 단순히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순한 반론문의 게재만이 허용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용어 표현과는 달리 피해자가 정기간행물의 사실적 주장(이하 원문보도라 한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고, 원문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보도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4.

재판장	대법관	이 돈 회
주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최 중 영
	대법관	이 임 수

□